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3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6.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안 제2조제1항)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공적 범위 조정 (안 제2조제2항)
- 일상적인 체납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개선으로 객관성 제고(안 제5조제3항)
 - (현행) 내부위원 5명 ⇒ (개선) 내부위원 2명, 외부 전문가 3명
-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상옥)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관 주관으로 실시된 최근 3년간 징수포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 범위를 영등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제2조제4항에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체납세액고지서 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 단순히 경·공매 사건에 교부 청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현행 내부 위원 5명을 개선하여 내부 위원 3명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34 호
----------	---------

제출연월일 : 2012.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안 제2조 제1항)

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공적 범위 조정 (안 제2조제2항)

다. 일상적인 체납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개선으로 객관성 제고(안 제5조제3항)

(현행) 내부위원 5명 ⇒ (개선) 내부위원 2명, 외부 전문가 3명

마.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5. 24 ~ 5. 29)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 3) 반부패영향평가 심사여부 : 심사완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라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 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

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각 국별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제2조제4항에 따른 지급 제외는 조례 시행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징수 년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직급	성명	성명	주소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비율	금액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 세 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팀장)	포상금 지급		
	직급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포상 금액	지급일	사유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소속 (주소)	직급	성명	건수	금액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p> <p>1. <u>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p> <p>2.·3. (생략)</p> <p>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해당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p>	<p>제1조(목적) ----- ----- 민간인의 <u>포상금 지급에</u> ----- -----.</p> <p>제2조(지급대상) ① ----- ----- 사람에게 대해서----- ----- 포상금----- -----.</p> <p>1. <u>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u></p> <p>2.·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세기본법」 제68조----- ----- -----</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p>

현행	개정안
<p>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p> <p>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p> <p>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p> <p>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p> <p>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p> <p>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p> <p>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 퇴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생 략)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 	<p>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p> <p>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조(지급기준)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2. 지난년도 체납액 ----- 체납액----- 3. 지난년도 체납액 ----- 4. (현행과 같음)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

현행	개정안
<p>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는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p> <p>가.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라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 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p> <p>(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p>

현행	개정안
<p>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p> <p><신설></p> <p>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미수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국별로 영등포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p> <p>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p> <p>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p> <p>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p> <p>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p>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p> <p>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각 국별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신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신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

현행	개정안
<p>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p>	<p>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p>

현행	개정안
<p>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9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징수 년월일</th> <th colspan="2">징수자</th> <th colspan="3">채납자</th> <th colspan="4">징수내역</th> <th rowspan="2">징수 확인 (계장)</th> <th rowspan="2">특별징 수공적 (사유)</th> <th rowspan="2">포상금청구 (지급)액</th> <th rowspan="2">지급일</th> </tr> <tr> <th>직급</th> <th>성명</th> <th>성명</th> <th>주소</th> <th>주민 등록 번호</th> <th>년도 기분</th> <th>과세 번호</th> <th>세목</th> <th>징수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징수 년월일	징수자		채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계장)	특별징 수공적 (사유)	포상금청구 (지급)액	지급일	직급	성명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p><별지 제1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징수 년월일</th> <th colspan="2">징수자</th> <th colspan="2">채납자</th> <th colspan="4">징수내역</th> <th rowspan="2">특별징수 공적(사유)</th> <th colspan="2">포상금</th> </tr> <tr> <th>직급</th> <th>성명</th> <th>성명</th> <th>주소</th> <th>년도 기분</th> <th>과세 번호</th> <th>세목</th> <th>징수액</th> <th>비율</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징수 년월일	징수자		채납자		징수내역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직급	성명	성명	주소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비율	금액													
징수 년월일	징수자		채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계장)	특별징 수공적 (사유)	포상금청구 (지급)액		지급일																																																																																			
	직급	성명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징수 년월일	징수자		채납자		징수내역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직급	성명	성명	주소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비율	금액																																																																																						
<p><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정대장(포상금 지급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납기</th> <th colspan="2">부과자(제보자)</th> <th rowspan="2">세목</th>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발굴 세원</th> <th colspan="3">납세의무자</th> <th rowspan="2">징수 일자</th> <th rowspan="2">징수 확인 (계장)</th> <th colspan="3">포상금 지급</th> </tr> <tr> <th>직급 (주소)</th> <th>성명 (주민등록 번호)</th> <th>주소</th> <th>성명</th> <th>주민등록 번호</th> <th>포상 금액</th> <th>지급일</th> <th>사유</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계장)	포상금 지급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포상 금액	지급일	사유															<p><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정대장(포상금 지급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납기</th> <th colspan="2">부과자(제보자)</th> <th rowspan="2">세목</th>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발굴세 원</th> <th colspan="2">납세의무자</th> <th rowspan="2">징수 일자</th> <th rowspan="2">징수 확인 (팀장)</th> <th colspan="3">포상금 지급</th> </tr> <tr> <th>직급 (주소)</th> <th>성명 (생년월일)</th> <th>주소</th> <th>성명</th> <th>포상 금액</th> <th>지급일</th> <th>사유</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 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팀장)	포상금 지급			직급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포상 금액	지급일	사유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계장)	포상금 지급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포상 금액	지급일	사유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 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팀장)	포상금 지급																																																																																							
	직급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포상 금액	지급일	사유																																																																																					
<p><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신 청 자</th> <th colspan="4">징수(세원발굴)액</th> <th rowspan="2">청구액</th> <th rowspan="2">거래은행 계좌번호</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소속 (주소)</th> <th>성명</th> <th>주민번호</th> <th>건수</th> <th>합계</th> <th>본세</th> <th>가산금</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p><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신 청 자</th> <th colspan="2">징수(세원발굴)액</th> <th rowspan="2">청구액</th> <th rowspan="2">거래은행</th> <th rowspan="2">계좌번호</th> <th rowspan="2">예금주</th> </tr> <tr> <th>소속 (주소)</th> <th>직급</th> <th>성명</th> <th>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소속 (주소)	직급	성명	건수	금액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소속 (주소)	직급	성명	건수	금액																																																																																													